

# 2015 국민생활건강대학 위탁교육 협약서



서대문구청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 2015 구민생활건강대학 위탁교육 협약

서대문구는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 구민 생활건강대학' 운영 사업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서대문구 (이하 "구"라한다)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한다)간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이행하기로 확약한다.

**제1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 무 명 : 2015 구민생활건강대학
- 과 정 명 : 생활건강지킴이 양성과정, 아동심리놀이지도 및 폭력예방상담 과정 (2개과정)
- 교육기간 : 2015. 9. 14(월) ~ 11. 4(수) / 과정별 각 42시간
- 교육대상 : 서대문구민 80명
- 사무내용

서대문구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정 및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li> <li>- 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li> <li>- 교육과정 평가 및 정산검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운영 제반에 관한 사항</li> <li>· 교육생 모집</li> <li>· 교육과정계획수립, 운영, 평가</li> <li>· 개강, 수료에 관한 제반사항</li> <li>- 위탁교육비 집행 및 정산보고</li> </ul>

**제2조(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위·수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사업 종료 시 까지로 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구"과 "교육원"은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상호 합의하에 본 협약(협약관계 서류포함)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내용의 변경은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다.

② 이 협약을 기간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구"과 "교육원"의 협의에 의한다.

③ "교육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구"는 이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협약이 해지된 경우에 "교육원"은 이의제기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
2.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3. 공익을 위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고,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구”과 “교육원”의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5조(“구”의 업무수행)** “구”의 수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금을 교부한다.
- ②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과정운영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6조(“교육원”의 업무수행)** “교육원”의 수행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등록에 관한 사항
  - 1. 교육과정 개시 이전 등록자에게 교육생이 부담하여야 하는 교육비, 교육계획 등 교육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교육생에게 명백히 고지한다.
- ② 교육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1. 교육운영 전 세부적인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1.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종합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④ “구”가 교육 전반에 관한 관계서류의 제출이나 열람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과정운영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수료조건 및 특전)** 구민생활건강대학의 교육과정을 80%이상 출석한 교육생에게는 서울여자대학교 총장과 평생교육원장 공동명의로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8조(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① “구”는 사업비로 총 이천만원의 위탁금을 “교육원”의 청구에 의해 15일 이내 교부한다.

- ② “교육원”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협의된 사업계획과 협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교육원”은 위탁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 종합 결과 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교육원”은 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위·수탁금 교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자 포함)은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 ① 각 당사자는 본 협약에 의거하여 제공된 문서, 자료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승인 및 합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본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② 본 조항은 본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 되었을 때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9조(기타)** ① “교육원”은 “구”의 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위탁한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교육원”이 져야한다.

③ “교육원”의 귀책사유로 교육 해지 시 “구”는 “교육원”을 부적당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참여를 제한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 협의 또는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육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0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구”와 “교육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 년 8 월 일

“구”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장 문 석 진 (인)

“교육원”



서울시 서대문구 간호대로 38  
서울여자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이 선 경 (인)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총 장  
김 중 수 (인)